법원공보

2024. 08. 01 THURSDAY VOL.1693



77

법원행정처

contents

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가정보호심판규칙 전부개정규칙 —————	- 1300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	– 1 32 9	
<u>예규</u>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 1333	
신법령 목록		- 1335	

규칙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56호 2024. 7. 26.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주 최초 10시 간 단축분에 대 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수당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 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 에 해당하는 금액(20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 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10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 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 이기 근로시간 단 축수당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 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 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 로 하고, 50만원을 하한 액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 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힏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① ~ ③ (생 략) ④ 육아휴직 대상 법관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해당 법관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지급한다.

(매주 최초 <u>5시간</u> 단 축분) 육아기 근무시 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 x	5
당하는 금액(200만원 ^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무시 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 근무시간 - 5
액(150만원을 상한액 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개 정 안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1
매주 최초 10시간 단 축분에 대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 = 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 액으로 한다)	10 (주당 단축 근무 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 설제 단축한 시 <u>간으로 한다)</u>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 무시간 단 축분에 대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 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주당 근무시간 - 10 (주당 단축 근무 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 간으로 한다)

● 가정보호심판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57호 2024. 7. 26. 공포)

가정보호심판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에 따른다.
 - 2. 제1호의 가정법원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별표 3에 따른다.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관할 법원은「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③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취소·변경 신청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취소·변경 및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있다.
- 1.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인 경우
- 2.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기소된 경우
- 3.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 ④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가정폭력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12조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 ⑤ 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해당 가정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3조(결정서) ①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결정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 1. 임시조치 및 그 연장·취소·변경 결정
 - 2. 불처분 결정
 - 3. 보호처분 및 그 변경·취소·종료 결정
 - 4.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취소 결정
 - 5. 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연장·취소·변경 결정
 - ②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 결정의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다만, 제4호에 한한다) 및 주문 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는 제2항의 행위자에 관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와 보조인의 성명 및 주소(보조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한다)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보호처분 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 결정서를 미리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고지한 후에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 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위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3조제1항 각 호의 결정(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위탁·유치된 행위자에 관하여이송·보호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의 임시조치가 계속 중인 행위자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탁·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결정
 - 2. 보호처분의 취소·종료 결정
 - 3.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

- 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이송 결정
- 2. 보호처분 결정
- 3.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결정
- 4.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 ② 보호처분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결정
- 2.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이송 결정
- 2.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 3.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 결정
- 4. 법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 ④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결정
- 2. 법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임시조치·이송·불처분·보호처분 결정과 보호처분의 변경·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 제8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① 법원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37조제2항제1호·제46조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송치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 ②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집행된 유치기간은 「형법」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 ③ 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이송받는 법원에 직접 송부한다.
- 제9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40조 제1항제4호·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 집행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 ③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1. 임시조치청구 사건
 - 가. 해당 청구가 기각된 때
 - 나.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
 - 다.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
 - 2. 가정보호사건
 -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나. 보호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때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절 통칙

- 제11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임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등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행위자·피해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행위자에게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통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 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피해자,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 수탁·유치기관·상담수탁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검사의 송치방식) ① 검사가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구속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

- 을 기재할 수 있다.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송치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참고자료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 ③ 공범이 있거나 법 제11조제2항 등의 사유로 송치서에 제2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① 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의 적당한 여백에 석방지휘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그 등본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교부한다.
- 제14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행위자의 범죄사실
- 2. 행위자는 변호사나 그 밖에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제15조(조회응답) 가정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조사·심리

-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관찰·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심문 등을 할 수 있다.

-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1. 법 제22조의 진단소견 · 의견조회
-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 3. 법 제36조의 협조·원조
- ④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 2.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 3.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그 정도
- 4.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 한다.
- 제18조(조사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사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제25조를 준용한다.
- 제19조(소환) ①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된다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제 187조 및 제 194조부터 제 19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및 「형사소송법」 제 76조제 2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수탁·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이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경우 그 수탁·유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

여야 한다.

- ② 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된 경우 법원은 그 수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1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26조에서 정한 기재사항 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2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① 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 제23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로서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이 완료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집행일시와 장소 및 법원에 인치한 일시를, 집행할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동행영장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① 동행영장의 집행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사는 동행영장의 집행담당 자에게 동행영장에 기재된 수용할 장소에 행위자를 수용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수용된 행위자의 소환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②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제25조(보조인) ① 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인에게도 준용한다.
- 제26조(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임·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 제28조(임시위탁) ① 행위자의 정신질환·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 등 행위자를 감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 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①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을 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법원장·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행위자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0조(임시위탁비용) ①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에 드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상비용산정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위탁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판사는 행위자가 위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 강보험법」,「의료급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 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제31조(지급절차)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 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 재한 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 비용을 결정한다.
 - ③ 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 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판사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은 사건담임자는 그 청구서를 즉시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한다.
 - ⑥ 회계관계공무원은 제5항의 기간에 위탁비용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수탁 기관의 명칭, 위탁종료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위탁비용의 금액, 입금 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 ②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 ④ 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용통보 서 또는 석방통보서를 법원에 보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⑤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위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할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따른다.
-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변경) ①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변경 신청과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②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피해자·가 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 ③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조치 결정을 한 법원·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조치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34조(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① 법 제15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② 법 제15조에 따른 이송 결정 시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탁· 유치·상담위탁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35조(심리기일의 통지) ① 피해자·보조인·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팩스·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36조(심리기일 변경 청구) ① 법 제31조에 따른 심리기일 변경 청구에는 심리기일의 변

- 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 단서나 그 밖의 자료로 그 사유와 기간에 대해 소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 제37조(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 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각각 배치한다.
 -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심리의 비공개)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하다.
 - ②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9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①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야 한다.
 -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가정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될 수 있으면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 제40조(증인신문) ① 법 제32조제2항·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타인의 진술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원진술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원진술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준용규정)「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34조·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준용한다.

- 제42조(심리조서) ①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 3. 심리의 공개 여부
 - 4.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 여부
 -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 6.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 7. 행위자의 진술요지
 - 8. 조사관 및 보조인 등의 진술요지
 - 9.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 10.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 11.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 ③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형사소송규칙」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다.
- 제43조(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② 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제7조를 준용한다.
- 제44조(결정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① 행위자·보조인 및 피해자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

재한 조서의 등본·초본이나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45조(불처분 결정) ①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유치기관에 수용 중이면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보호처분

- 제46조(보호처분) ① 판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각 경고하여야 한다.
- 제47조(친권 행사의 제한) ① 친권 행사의 제한 결정을 할 때에는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 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 제48조(사회봉사·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 ②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에 그 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③ 사회봉사·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49조(감호·치료·상담 위탁) ①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0조제1항제6 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행위자의 정신질환·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0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동의 및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50조(치료·상담 위탁비용) 법 제40조제1항제7호·제8호의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비용의 예납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탁기관의 장 등에게 송부할 때에는 그 등본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자료를 원본으로 송부받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그 원본을 송부한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52조(보호처분의 집행)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 제53조(몰수 결정의 집행 등) 몰수 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54조(집행상황 보고) ①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 수탁기관의 감호 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① 법 제45조제1항·제46조·제4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의 청구는 그 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③ 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취소·종료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고,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보호처분의 변경·취소는 보호처분 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청구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보호처분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56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제5호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제4절 항고·재항고

제57조(항고 제기의 방식)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제58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임시조치 및 그 연장·변경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의 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59조(항고의 취하) ① 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항고를 취하할 때에는 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각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제40조제1항 제6호·제7호에 따라 수탁·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 제기 기간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 제기 기간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 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61조(항고법원의 조사) 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② 항고법원은 법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는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 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 제63조(취소환송·이송) ① 수탁·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기 전에 미리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수탁·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취소환송·이송 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③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4조(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결정에 관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및 그 연장·변경 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65조(몰수·배상명령의 취소) ① 항고법원이 원심의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불처분 결정을 하는 때에는 원심의 몰수 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법원이 원심의 몰수 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 또는 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② 원심에서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파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① 대법원은 법 제52조에 따른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한 경우에 그 기록 및 항고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결정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및 이 규칙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1절 통칙

제69조(청구의 방식) 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피해자 및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주소와 성명(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 중 해당하는 청구의 표시
 - 3.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 4.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
 - 5.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 6. 청구 연월일
 - 7. 법원의 표시
 - ③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
- 제70조(보조인) ① 피해자 및 행위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수 있다.
 - ② 피해자 및 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상담소등(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판사는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과 피해자·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1조(국선보조인) ① 법원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법원은 행위자가「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그 밖에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규칙」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2조(이송) ①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법원에

- 이송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① 피해자는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③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
 - ④ 청구서를 행위자에게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도 송달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단서의 경우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⑥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된 경우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절 임시보호명령

- 제74조(임시보호명령) ① 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 제75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은 병과할수 있다.
- 제76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2조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보호명령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제77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①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사관, 법원사무관등,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 ③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78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 ①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②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행위자 ·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은 임시보호명령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임시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77조를 준용한다.

제3절 조사·심리

- 제79조(조사의 방법) ①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피해자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가정구성원 또는 상담소등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 ② 조사관은 피해자·행위자, 가정구성원 및 상담소등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관찰·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조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심문 등을 할 수 있다.
 - ④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1.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의 진단소견·의견조회

- 2.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의 협조·원조
- 3. 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
- 4. 법 제55조의4의 임시보호명령
- ⑤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 2. 피해자 및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 3.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그 정도
- 4. 피해자보호의 필요성
- 5. 그 밖에 심리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제80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자·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1조(소환) ① 피해자·행위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소환된다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③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 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이 경우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보호 명령 청구서 부본 상의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 ④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 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2조(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법원청사의 사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자, 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청구인이 제81조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제83조(병합심리 등) ① 법 제55조의6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경우에는 주문에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른 결정과 보호처분에 따른 결정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보호명령과 보호처분은 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84조(증인신문)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비공 개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5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3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86조(심리조서) ①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 3. 심리의 공개 여부
 - 4. 피해자 및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 여부
 -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 6. 피해자 및 행위자의 진술요지
 - 7. 조사관 및 보조인의 진술요지
 - 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 9.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 10.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 ③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7조(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가정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 에 대한 열람·등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 제88조(결정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이나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89조(기각결정) ①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없 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 야 한다.
- 제90조(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6조, 제38조를 준용한다.

제4절 피해자보호명령

제91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 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 ③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의 고지는 결정서를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 제92조(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77조를 준용한다.
- 제93조(이행실태의 보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94조(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변경 신청과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②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변경·연장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피해자·행위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결정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5조(준용규정) 친권 행사의 제한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제5절 항고·재항고

- 제96조(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 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결정에 관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 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97조(항고·재항고의 추후 보완)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 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 제98조(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배상명령

- 제99조(증거 신청) ①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 제100조(증거조사) ① 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가정보호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규정된 증거 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 송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제101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① 보호처분 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 결정을 하거나 배상 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 포기·취하, 상소 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2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① 행위자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과 증거물을 14일 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행위자가 배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준용한다.

- ③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배상명령은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으로 본다.
- 제103조(재판정본의 작성·보존) ①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 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배상명령이 제1심 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경우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 ③ 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04조(재판정본의 교부) ①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절차에 따라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5조(준용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 및「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준용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부터 적용한다.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58호 2024. 7. 26.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제60조의5에 따라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직급)"을 "(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0조의5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7조의2제5항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제6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5(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 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 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수 있다.

- 1. ~ 8. (생략)
- ② ~ ④ (생 략)

제23조(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직급) (생 략)

〈신 설〉

개 정 안

1119소(경덕경생재용시엄등의 응시요건 등)
①
<u>제60조의5에 따라 중증장애</u>
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응시하
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u>일반임기제공무원</u>
1. ~ 8.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3조<u>(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제60조의5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현 행

제47조의2(근속승진임용) ①~④ (생 략)

-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 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 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제38조에 따른 승 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 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개 정 안

제47조의2(근속승진임용) ①~④ (현행과 같음)

⑤	
10	
<u> </u>	
	-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수 있다.

- 제60조의5(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 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예규

●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01호 2024. 7. 22.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 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규칙 제 47조의2제5항에서 정한 인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의2제1항 중 "정한"을 "정하는"으로,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년"을 "6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① ~ ③ (생략)

- ④ 일반직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는 ④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법원행 정처장이 심사기준일과 심사기한을 정하여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공무 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 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 47조의2제5항에서 정한 인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생략)
- 제44조의2(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 제2 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간" 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 ② 법 제71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휴직(이 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 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 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 ③ (생략)

정

- 제6조(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수 있는 인원 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규칙 제47조의2제5항에서 정한 인원 수를 초과 할 수 없다.

⑤ (현행과 같음)

ll 44조의2(자기개발휴직) ①	
3	성하는
<u>3년</u>	
②	
<u>6년</u>	

③ (현행과 같음)

신법령 목록

(2024. 7. 1.~2024. 7. 15.)

조약

조약제2579호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 **20784 2024. 07. 03 3** 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4620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783	2024. 07. 02	4
대통령령제3462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5
대통령령제34622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34623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34624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34625호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34626호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3462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3462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9
대통령령제34629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40
대통령령제34630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n	47
대통령령제34631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52

대통령령제3463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4 56
대통령령제34634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34635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 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63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 " 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637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638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 대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463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6
대통령령제34635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 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63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 " 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637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 를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638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 배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463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제 통령령제34639호	,	
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63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637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 를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638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 " 대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463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 를 시행령 일부개정령		59
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637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638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 # 대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463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를 시행령 일부개정령	,	61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638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	,	66
대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463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67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75
대통령령제3464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9
	,	94
대통령령제3464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96
대통령령제3464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98
대통령령제34643호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0
대통령령제34644호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3
대통령령제34645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105
대통령령제34646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 " 병 일부개정령	,	107
대통령령제34647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08
대통령령제3464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7	110
대통령령제34649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 병 일부개정령	,	112
대통령령제34650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3465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117
대통령령제3465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3
대통령령제3465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125
대통령령제34654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9
대통령령제34655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4
대통령령제34656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138
대통령령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141
대통령령제34658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51
대통령령제3465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3
대통령령제34660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	"	180
대통령령제34661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	"	183
대통령령제3466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185
대통령령제34663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187
대통령령제3466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89
대통령령제3466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1
대통령령제34666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192
대통령령제3466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94
대통령령제3466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788	2024. 07. 09	4
대통령령제34670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4671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 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10
대통령령제34672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n	21
대통령령제34673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n	23
대통령령제34674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3467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3467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3467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7
대통령령제34678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3467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n	39
대통령령제34680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2
대통령령제34681호	경론·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6
대통령령제34682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7
대통령령제3468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
대통령령제34684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4
대통령령제34685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56
대통령령제34686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n	59
대통령령제34687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2
대통령령제34688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346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n	67

대통령령제3469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8
대통령령제3469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령	"	"	70
대통령령제34692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3469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73
대통령령제3469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5
대통령령제34695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7
대통령령제34696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0
대통령령제34697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102
대통령령제34658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정정	20789	2024. 07. 10	4
대통령령제34698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790	2024. 07. 11	4
대통령령제34699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총리령

총리령제1966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20783	2024. 07. 02	200
총리령제1967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20784	2024. 07. 03	13
총리령제196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21
총리령제196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9
총리령제1971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787	2024. 07. 08	4
총리령제1970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788	2024. 07. 09	107

부령

고용노동부령제41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782	2024. 07. 01	4
고용노동부령제42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
교육부령제33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4
교육부령제33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8
국토교통부령제134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0
기획재정부령제107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8
기획재정부령제107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70
문화체육관광부령제55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5
산업통상자원부령제563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76
여성가족부령제205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0
해양수산부령제678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1
해양수산부령제67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7
행정안전부령제49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91
국방부령제1153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783	2024. 07. 02	204
국토교통부령제134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3
기획재정부령제107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7
기획재정부령제1073호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에 관한 규칙	"	"	229

기획재정부령제1074호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 세 부과에 관한 규칙	"	"	231
기획재정부령제1075호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 세 부과에 관한 규칙	"	"	233
기획재정부령제1076호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 과에 관한 규칙	"	"	235
농림축산식품부령제667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37
보건복지부령제101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239
보건복지부령제1024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42
외교부령제13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44
행정안전부령제492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	"	245
행정안전부령제49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48
국토교통부령제135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784	2024. 07. 03	44
농림축산식품부령제668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5
농림축산식품부령제67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48
해양수산부령제680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2
농림축산식품부령제66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2
농림축산식품부령제671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785	2024. 07. 04	3
해양수산부령제681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9
환경부령제1103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2
보건복지부령제102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786	2024. 07. 05	5
환경부령제1105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 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n	14

환경부령제1104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787	2024. 07. 08	8
국토교통부령제1352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788	2024. 07. 09	113
해양수산부령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116
국토교통부령제136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789	2024. 07. 10	2
환경부령제110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국방부령제1154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국방부령제115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12
국토교통부령제1351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국토교통부령제135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20
국토교통부령제1354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
국토교통부령제1355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4
국토교통부령제1356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	"	25
산업통상자원부령제564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	"	25
국토교통부령제1357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9
환경부령제1107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9
국토교통부령제135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33
국토교통부령제1359호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	"	"	35

국토교통부령제1360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령	"	"	39
국토교통부령제136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1
보건복지부령제102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8
보건복지부령제102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9
보건복지부령제1028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0
보건복지부령제1029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4
산업통상자원부령제56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6
산업통상자원부령제566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 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정령	"	"	62
중소벤처기업부령제88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71
해양수산부령제675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 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78
환경부령제110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9
국토교통부령제1363호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 개정령	20791	2024. 07. 12	4
보건복지부령제1030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법원행정처

SUPREME COURT OF KOREA 2024. 08. 01. **VOL. 1693**



ISSN 2951-2255